

주유소 허가제도 개선



박 양 우
〈상공자원부 석유수급과장〉

1. 개선배경

정부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80년대 중반 이후 석유산업의 자율화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석유가격 자율화, 석유수출입 자유화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난 1991년에는 석유유통부문의 서비스 경쟁촉진 및 경영현대화등을 위하여 정유사 및 직영대리점의 주유소취득을 금지했던 「3·14조정명령」을 해제하는 한편 1992년 4월에는 석유유통부문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표표지(Pole Sign)를 실시하는등 석유유통구조개선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난 1991년 11월에는 주유소의 경쟁촉진 및 소비자편의를 위해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주유소 간 거리기준을 종전의 1/2로 축소하여 서울지역은 350m, 직할시 및 시·읍지역은 500m, 기타지역은 1km 이상으로 완화 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거리기준도 석유산업의 자율화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2년 후에는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하여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석유산업자율화 시책을 추진해 오는 동안 정유산업의 경쟁촉진 및 경쟁력강화가 제고되고 석유유통부문의 공정거래질서 풍토가 조성되었으며, 서비스개선인식이 향상되는등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있으나, 특히 주유소부문에 있어서는 주유소간 거리제한 완화 이후 석유수요를 상회하는 주유소수의 증가로 경영이 악화되고 지역간 경영실적의 편차가 심화되는등 현행 석유가격체제하에서는 유통마진의 인상 압력이 가중되게 되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는 토초세회피 및 농지전용을 통한 부동산투기 또는 전매목적의 주유소 신설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였고, 주유소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주유소허가기준이 지역적 실정을 반영하지 못해 민원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동안 추진해 오던 석유사업 자율화 시책도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다소 수정됨으로써 석유수출입자유화, 신규참입완화 등의 시책이 다소 늦추어지게 되었다.

나. 현행 주유소허가제도 문제점 분석

(1) 현행 주유소허가제도 운영상 문제점

현행 주유소업 운영실태를 볼때 첫번째로 제기되는 문제점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동안 지역별 주유소수가 석유수요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여 주유소 경영실적이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지역간 경영편차도 심화되는 추세에 있어 대도시지역은

그래도 경영실적이 다소 양호한 편이나,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은 주유소판매량이 적정수준에 미달되는등 주유소업의 건전육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두번째로 제기되는 문제점은 현행 주유소허가기준 상 시설기준이 저장시설, 주유기, 화장실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주유소의 환경개선이 미약하고, 석유유통산업의 대외개방에 대비한 주유소의 경영다각화가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주유소허가제도는 환경여건의 열악으로 인한 민원빈발을 초래하고 있으며, 경영다각화의 미약으로 인해 주유소가 석유판매수입에만 의존하므로 석유유통마진의 인상압력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초래되어 부대사업범위의 확대 및 부지면적기준도입등 시설기준의 보완이 요청되고 있다.

또한 세번째로 현행 주유소허가제도는 그 허가기준을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정하므로써 시·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지역적 실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주유소 세부 허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청되고 있다.

<표-2> 지역별 주유소별 경영실적추이

	1990		1991		1992		1993	
		%		%		%	(1-6)	%
○석유수요(백만배럴)	87.7	28.9	106.9	21.9	131.5	23.0	68.6	19.9
-6대도시	36.9	22.6	42.5	15.2	48.1	13.2	25.3	17.2
-기 타	50.8	34.0	64.4	26.8	83.4	29.5	43.3	21.3
○영업주유소수(개)	3,452	14.9	4,148	20.2	5,210	25.6	5,647	25.9
-6대도시	839	5.4	858	2.3	1,027	19.7	1,144	29.3
-기 타	2,613	18.3	3,290	25.9	4,183	27.1	4,503	25.1
○주유소당판매량(드림/월)	1,683	12.3	1,707	1.4	1,672	△2.1	1,610	△4.8
-6대도시	2,914	16.3	3,282	12.6	3,103	△5.5	2,930	△7.5
-기 타	1,288	13.3	1,297	0.7	1,321	1.9	1,274	△4.1

<표-3> 주유소 마진을 추이 (단위 : %)

취 등 경	발 유 유 유	1988	1991.7	1992.6.25~1993 현재	1993 일본의 마진율
		9.6	6.8	5.8	12.4
8.4	7.3	7.1	23.9		
8.4	8.4	7.6	44.4		

※ '92 마진율 : 일반도매업(11.4%), 일반소매업(13.6%).

그리고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오던 석유산업자율화 시책도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정부의 물가정책, 산업정책등 경제정책과 연계하여 당초 계획보다 다소 수정됨으로써 석유가격 및 석유수출입자유화, 정유산업의 신규참여완화 등의 시책이 다소 늦추어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석유산업의 상류부문에 대한 자율화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가운데 석유산업의 하류부문인 주유소업의 자율화 시책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석유산업전반의 균형발전 및 경제효율화에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석유산업의 여건을 고려, 주유소업의 운영실태를 분석하는 한편,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행 주유소허가제도하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주유소등 석유산업의 자율화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석유산업의 건전육성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우세하게 됨에 따라 주유소 허가제도 개선작업을 착수하게 되었다.

2. 주유소허가제도 현황 및 문제점분석

가. 주유소허가제도 현황

현행 석유사업법령상 주유소허가제도를 살펴보면 주유소등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사업법시행령 제9조 및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동 허가권은 시·도지사에 위임되었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에 재위임되어 운영하고 있다. (석

석유산업 자율화 시책을 추진해 오는 동안 주유소부문에 있어서는 주유소간 거리제한 완화 이후 석유수요를 상회하는 주유소수의 증가로 경영이 악화되고 지역간 경영실적의 편차가 심화되는 등 유통마진의 인상 압력이 가중되었다.

유사업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25조참조)

따라서 현행 주유소허가절차는 주유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유소허가기준에 따라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고, 시·군·구청장은 신청내용을 토대로 그 허가기준과 소방법, 건축법등 관계법령과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유소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시·군·구청장은 주유소허가후 주유소허가기준과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한 때등 석유사업법령이 정하는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사업정지등의 행정처분과 벌칙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표-1> 현행 주유소 허가기준(석유사업법시행령 제9조 별표1의 3)

허 가 기 준		서 울	직할시·시·읍	기 타 지 역	비 고
시 설 기 준	· 저장시설	40kl 이상	· 20kl 이상	20kl 이상	· 화장실시설기준은 시·도지사가 정함
	· 주 유 기	4대 이상	2대 이상	2대 이상	
	· 화 장 실	1개소	1개소	1개소	
주유소간거리기준		350m	500m	1km	· 동거리기준은 시·도지사가 결정

(2) 현행 주유소간 거리기준의 완전폐지시 문제점
 현행 주유소간 거리기준은 석유사업법시행령 부칙으로 1993년 11월 15일부터 전면 폐지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예고된 대로 주유소간 거리기준은 전면 폐지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현행 주유소간 거리기준을 완전폐지할 경우 주유소의 급증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주유소난립 및 경영악화가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1991년 11월 거리기준 완화 이후 주유소증가 추세의 경험을 고려해 볼 때 동거리기준의 전면폐지시는 신규주유소의 급증으로 주유소 난립이 예상되고 과당경쟁에 의한 유통질서 문란과 유통비용 상승에 의한 유가인상이 초래되어 결국 소비자부담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파생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석유유통마진은 정부의 물가정책과 연계하여 오랜 기간 동결하고 있는 바 거리기준을 전면 폐지할 경우 주유소수의 증가로 주유소당 판매량을 감소시켜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이는 주유소업자의 유통마진 인상요구로 작용하여 결국 유가인상 부담으로 귀결되는 등 궁극적으로 정부의 물가정책 및 소비자부담으로 전가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주유소간 거리기준의 전면폐지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경우 토초세 회피목적의 주유소신설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농촌지역의 경우는 농지전용을 통한 부동산투기 또는 전매목적의 주유소신설을 부추켜 주유소업의 경영실패를 왜곡시키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3) 현행 주유소간 거리기준 유지시 문제점
 반면 현행 주유소간 거리기준을 유지할 경우 그동안

정부는 석유유통산업중 주유소부분의 정책추진목표로 석유유통부분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주민및 소비자의 편익제고 및 주유소업의 건전육성등에 두고 있다.

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첫번째로 주유소허가의 이권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주유소간 거리제한이 주유소설치 제한으로 작용하여 주유소가 이권화하게 되고 이는 결국 부당한 매매의 대상이 되는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두번째로 주유소간 거리기준의 유지는 주유소가 도시계획, 환경여건등 지역적여건과 영업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못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가 예상되기도 한다. 그리고 세번째로 주유소간 거리기준을 유지하므로써 주유소간 상호경쟁요인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서비스개선등의 촉진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검토해 볼 때 주유소간 거리기준을 정부의 당초 방침대로 궁극적으로는 폐지해 나가되 주유소난립 및 경영악화등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청되었던 것이다.

〈표-4〉 시·도별 주유소허가 목적의 농지전용현황('91. 11~'92. 10)

	서울, 직할시	경 기	강 원	충북·충남	전북·전남	경북·경남	제 주	계
총허가수(A)	425	341	79	234	178	314	25	1,596
전용허가수(B)	25	155	53	190	113	185	11	732
(비 율 %)	(5.8)	(45.5)	(67.1)	(81.2)	(63.4)	(58.9)	(44)	(52.3)
면 적(천㎡)	29	160	60	209	154	205	13	830

정부는 지방화시대에 대비,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주유소허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별도 주유소의 세부허가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3. 주유소 허가제도 개선

가. 기본방향

정부는 석유유통산업중 주유소부문의 정책추진목표로 석유유통부문의 공정거래 질서확립, 주민 및 소비자의 편익제고 및 주유소업의 건전육성등에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주유소 허가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은 주유소업의 운영실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첫째 그동안 주유소거리기준의 완화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둘째 석유유통부문의 공정경쟁 및 서비스개선을 촉진하여 주유소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셋째 지역적실정을 고려한 주유소허가제도의 운영으로 주민 및 소비자 편익을 최대한 증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개선작업을 추진하였다.

나. 주유소허가제도 개선내용

이번 주유소허가제도의 개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주유소간 거리기준의 개선, 시·도의 별도 허가 기준 도입 및 기타 허가기준의 개선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 바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유소간 거리기준의 개선

주유소간 거리기준의 개선은 이번 주유소허가제도 개선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정부는 동거리기준의 개

선을 위해 각계각층의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유관기관, 전문가, 업계, 소비자 등을 망라하는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실현가능한 개선대안들을 현주유소 운영실태와 견주어 비교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번 주유소간 거리기준의 개선은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주유소 허가제도 운영상 나타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주유소간 경쟁 및 서비스개선 촉진도 고려하며, 지방주유소의 경영악화 방지를 통한 주유소의 건전육성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결과 이번 주유소간 거리기준의 개선은 비교적 경영성적이 지방지역에 비해 양호하고 경쟁여건이 조성된 서울·직할시등 6대 도시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폐지하고, 기타지역은 주유소난립 및 경영악화 방지를 감안하여 현행 거리기준을 2년간 연장 적용하도록 하였다.

(2) 시·도의 별도 주유소 허가기준 도입

정부는 현행 주유소허가제도상 그 허가기준을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정하므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주유소허가제도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민원사항을 빈발시키는 점을 감안, 지방화시대에 대비,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주유소허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별도 주유소의 세부허가기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즉 이번 주유소허가제도 개선을 통하여 중앙정부는 주유소가 그 본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설기준과 거리기준등을 석유사업법령으로 정하고, 시·도지사는 도시계획, 도로사정, 환경여건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주유소허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석유사업법령이 정한 허가기준 이외에 대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그 세부허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시·도지사가 별도의 주유소허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지침으로 활용토록하기 위해 「시·도

의 주유소허가기준고시제정 및 운용요령지침]을 시·도에 시행하여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주유소허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였다.

(3) 기타 주유소 허가제도개선

이번 주유소허가제도 개선에서는 그동안 주유소의 허가기준 및 사후관리 방법등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하였다.

즉 주유소 허가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사업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건축기간을 현실화하여 1년 이내로 연장 적용하도록 하고 이는 석유사업법 최초 개정시 개선 반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주유소업의 대외개방에 대비 주유소업의 현대화 및 경영다각화 촉진을 위해 주유소의 부대사업범위를 소방법령 규정에 의한 위험물시설 관리상 문제가 없는 사업은 모두 허용하는 방안으로 개선하였으며, 이사안은 현재 내무부가 소방시설 기준규칙을 개정하여 반영중에 있으며, 조만간 개정 공포될 예정이다.

주유소 허가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은 그동안 주유소거리 기준의 완화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주유소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주민·소비자편익을 최대한 증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표-5>

소방시설기준규칙상 주유소 부대사업범위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안
○ 주유취급소에는 사무실 기타 주유취급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건축물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유취급소에는 간이 음식점, 휴게실 또는 일상용품 및 자동차 부속용구 판매를 위한 점포, 간이 정비시설, 세차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표-6>

주유소허가기준 개선내용(석유사업법시행령 제9조 별표1 관련)

	종 전	개 정
시설 기준	저장시설 : 서울 40kl 이상 기타 20kl 이상 주 유 기 : 서울 4대 이상 기타 2대 이상 화 장 실 : 1개소	○ 좌 동(변동없음)
거리 기준	시·도지사가 지역적특수성 및 석유수급안정을 고려하여 주유소간 거리기준을 서울은 350m, 직할시 및 시·읍지역은 500m, 기타 지역은 1km 이내에서 따로 정할수 있다.	서울시 및 직할시는 주유소간 거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다. 단, 도지역의 경우 도지사가 지역적 특수성 및 석유수급안정을 고려하여 시·읍지역은 500m, 기타지역은 1k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거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단서조항은 1995. 11. 14일까지 적용)
기타 기준	신 설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도시계획·도로사정·환경여건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허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취급유종, 거리기준에서 정한 사항외의 사항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허가기준을 추가로 정할수 있다.

**이번 주유소허가제도 개선
은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나
정부의 제도 개선이 완벽하게
모든 사항을 고려할 수 있는
일반적 한계에 따라 몇가지 문
제점이 제기되기도 한다.**

4. 주유소허가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 예상문제점 및 대책

가. 주유소허가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정부가 이번 주유소허가제도 개선을 통하여 기대하는 효과는 우선 거리제한이 폐지되는 6대도시의 경우 주유소는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판매량 확대를 위하여 서비스개선을 촉진하거나 차별화해 나감으로써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이며, 아울러 효율적 경영체제의 구축을 위한 현대적 경영기법등의 도입이 촉진되어 주유소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거리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주유소설치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주유소 운영에 적합한 지역에 주유소가 설치되어 소비자의 이용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지방지역의 경우는 향후 2년간 현행 주유소간 거리기준이 유지됨에 따라 경영악화를 방지하여 주유소업을 건실하게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주유소 본래목적이 아닌 농지전용을 통한 부동산투기 또는 전매목적의 주유소 신설을 다소 억제하고, 주유소의 무분별한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을 완화하여 석유유통질서의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금번 주유소허가제도개선은 시·도지사에도 도시계획, 도로사정, 환경여건등 지역적 실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세부 주유소허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동안 중앙정부가 그 허가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함으로써 나타났던 부작용을 해소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주유소허가제도를 운영할 수 있어 많은 민원발생의 소지를 감소 시킬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주유소허가제도 개선에 따른 예상문제점 및 대책

이번 주유소허가제도 개선은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나, 정부의 제도개선이 완벽하게 모든 사항을 고려할 수 없는 일반적 한계에 따라 몇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한다.

우선 6대도시의 거리제한이 완화되면 주유소허가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유소가 위험물시설로 인식되는 현 상황에서 주유소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주유소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유사들은 이번 기회를 석유판매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호기로 활용하기 위해 신설주유소 확보경쟁을 치열하게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과정에서 석유유통 경쟁질서가 문란해지고 과도한 유통비용이 증가하는등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비효율 또는 부작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번 주유소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도시계획, 도로사정, 환경여건등 지역적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시 별도의 세부허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유소 설치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융통성있게 주유소허가제도를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유사간 신규주유소 확보를 위한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유5사에 대해 공정경쟁을 하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해나가는 한편, 특히 유통부문에 과도한 자금투입이 되지 않도록 정제비산정 방식의 개편등 유가관리 체계를 통하여 정유사의

자금운용방향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정유사간의 신규주유소확보를 위한 과열경쟁 실태를 실사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거래행위 및 과당경쟁 행위등에 대해서는 석유사업법 및 공정거래법에 의거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5. 맺는말

주유소허가제도는 그 이해관계인이 기존주유소업자 및 신설예정자 뿐만 아니라 석유대리점, 정유사등 관련업체와 소비자, 주민등 다양하고 그 이해관계인의 입장이 상호 상충하는 사안이므로 정부가 주유소허가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 모든 이해관계인이 만족할 수 있는 최적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주유소허가제도 개선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계 이해 관계인의 견해를 수렴 조정하고 정부의 경제정책과 연계하여 정책의지를 반영하는데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속에서도 정부는 가능한 한 이해관계인의 견해를 최대한 수렴하고 정부의 정책방향과 현행 석유산업여건을 고려하여 석유유통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공정한 경쟁질서확립, 그리고 소비자 및 주민의 편익증진등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유소허가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이번 주유소허가제도 개선은 이해관계인이 다양해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더라도 현행 석유산업의 여건하에서 정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방향으로 개선한 것인만

이번 주유소허가제도 개선을 이해 관계인이 다양해 모두가 만족할 수 없더라도 현행 석유산업 여건하에서 정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방향으로 개선한 것인 만큼 정부정책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

큼 다소간 의견을 달리하는 분이 계시더라도 정부정책에 호응하시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주유소허가제도의 새로운 룰(rule)이 정해졌으므로 이해관계인 모두가 새로운 룰을 지키고 그 룰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해나가는 한편, 시·도에서도 새로 정립된 주유소허가제도를 지역적 설정에 맞게 잘 운영해 나갈때 석유유통산업은 보다 건전하게 육성되고 소비자 및 주민의 편의도 더욱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개선된 주유소허가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그 분석된 내용을 향후의 주유소허가제도개선에 반영·보완해 나갈으로써 가장 바람직한 주유소허가제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

에너지 절약은 우리 손으로 부터